

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회운영위원회

의안번호	제 60 호
의결연월일	1996. 1. .

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 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1996. 1. 12. 박상문 의원외 3인
- 나. 회부일자 : 1996. 1. 12.
- 다. 상정일자 : 1996. 1. 17.

제45회 (임시회)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 (의원 : 박상문)

가. 개정 이유

- 국내여비규정의 개정 (1995. 12. 29, 대통령령 제14,857호)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(1995. 12. 30, 대통령령 제14,877호)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및 회의수당지급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회의 (본회의 또는 위원회)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,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3조제1항).

- 의원의 국내여행시 여행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인상함 (안 별표 1).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: 임치빈)

가. 개정 배경

-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, 회의수당 및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은 동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.
- 금번 개정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정 (1995. 12. 30, 대통령령 제14,877호)으로 단서에 「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」고 신설되었으며, 또한 국내여비규정의 개정 (1995. 12. 29, 대통령령 제14,857호)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11%~127% 인상하여 국내여비의 지급과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.
- 특히,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6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, 국내여비규정의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배경은 동법시행령 별표 6의 비교중 제3호에 「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」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 의견

- 제2기 지방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그 동안 의회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인 공휴일의 회의수당과 여비지급내용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4. 결의 · 답변 및 토론요지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